

무배당 달러연금보험

1종: (무) 100세 만족 달러연금보험

2종: (무) 달러연금보험(10년 보증형)

1. 상품안내

① 가입안내

보험종목

구분	상품명	계약 체결 시 연금지급형태
1종	무배당 100세 만족 달러연금보험	100세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2종	무배당 달러연금보험(10년 보증형)	10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사망보장기간 및 가입나이

사망보장기간	55세 만기	60세 만기	65세 만기	70세 만기
가입나이	만15세 - 40세	20세 - 45세	25세 - 50세	30세 - 55세

보험료 납입기간 : 전기납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보험가입금액 한도 : 최저 30,000달러 이상

※ 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기준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장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액 <주1>
사망보장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액 <주2>
계약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액을 대신하여 만기보험금을 선택하고, 사망보장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액 <주3>

<주1> 사망보험금액이라 함은 다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가. 기본사망보험금액(계약 체결시 정한 연금월액의 100배)

나.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보험료적립금”과 “기본사망보험금액의 20%” 를 합한 금액.

단, “기본사망보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보험료적립금은

상기 “사망 당시 보험료적립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2>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액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연금액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만기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지 급함(단, 10년, 15년, 20년 보증지급 또는 100 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증지급함)
확정연금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만기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분할계산한 연금월 액을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함

※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3> 만기보험금액이라 함은 계약체결시 1종의 경우 100세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2종의 경우 10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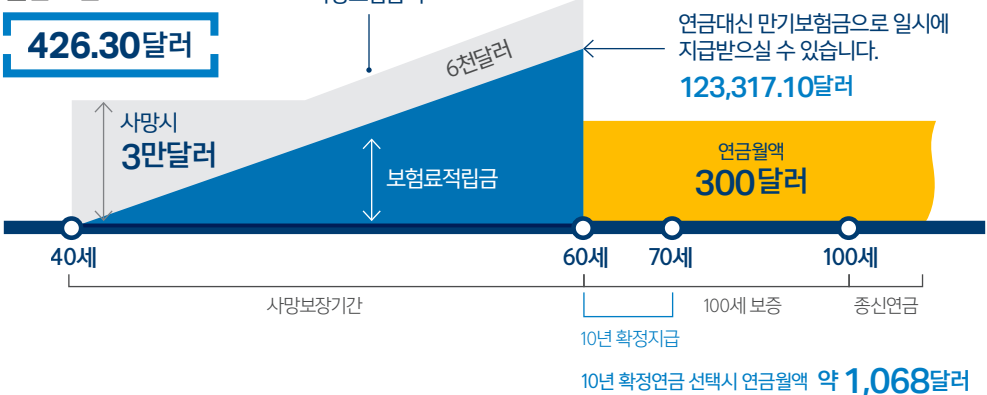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의 지급 등 이 계약과 관련된 통화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 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단, 가입시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이 의무적으로 부가되므로 보험료 납입을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을 이용하여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예시

100세 만족 달러연금보험

· 보험가입금액 3만달러, 남자 40세 가입, 60세 연금지급개시, 전기납, 월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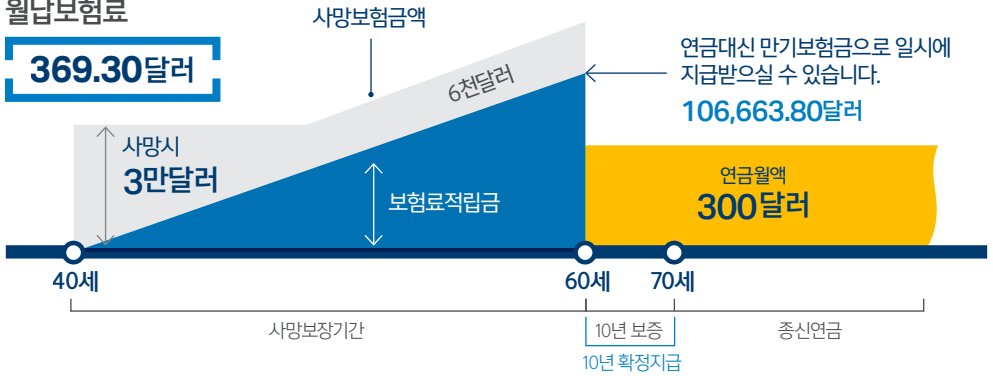
월납보험료



달러연금보험(10년 보증형)

월납보험료

369.30달러



※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연금월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년 확정연금 선택시 연금월액 **약 924달러**

④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⑤ 주의하여야 할 사항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⑥ 보험료 예시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3만달러, 60세 연금지급개시, 전가납, 월납, 단위: 달러)

성별	100세 만족 달러연금보험			달러연금보험(10년 보증형)		
	35세	40세	45세	35세	40세	45세
남자	318.30	426.30	610.80	278.40	369.30	523.20
여자	321.30	430.80	617.70	293.70	392.10	559.20

※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사망보장기간 연복리 2.5%, 연금지급기간 연복리 1.0%입니다.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⑦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3만달러, 40세 가입, 60세 연금지급개시, 전가납, 월납, 단위: 달러)

100세 만족 달러연금보험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개월	426.30	0	0%	430.80	0	0%
6개월	2,557.80	913.80	35%	2,584.80	929.70	35%
1년	5,115.60	3,438.90	67%	5,169.60	3,487.80	67%
3년	15,346.80	13,913.40	90%	15,508.80	14,096.10	90%
5년	25,578.00	24,912.90	97%	25,848.00	25,228.80	97%
10년	51,156.00	54,115.50	105%	51,696.00	54,786.90	105%
15년	76,734.00	86,604.30	112%	77,544.00	87,688.50	113%
20년	102,312.00	123,317.10	120%	103,392.00	124,897.20	120%

달러연금보험(10년 보증형)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개월	369.30	0	0%	392.10	0	0%
6개월	2,215.80	788.10	35%	2,352.60	843.30	35%
1년	4,431.60	2,971.80	67%	4,705.20	3,168.60	67%
3년	13,294.80	12,028.80	90%	14,115.60	12,810.60	90%
5년	22,158.00	21,540.00	97%	23,526.00	22,930.20	97%
10년	44,316.00	46,806.00	105%	47,052.00	49,801.20	105%
15년	66,474.00	74,910.90	112%	70,578.00	79,710.90	112%
20년	88,632.00	106,663.80	120%	94,104.00	113,534.40	120%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이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보험기간 등이 상기 예시의 기준과 다른 경우, 해지환급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⑧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II(의무부가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주계약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무배당 달러연금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부가됩니다.

보험료 등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보험료 등의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에서 정한 날이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주거래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하며, 아래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 납입형태는 '납입일-제1영업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납입형태	환산기준일
제1회 보험료	계약일 - 제1영업일
제2회 이후의 보험료(자동이체)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
제2회 이후의 보험료(자동이체 이외)	납입일 - 제1영업일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보험료 납입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보험료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납입기준환율: 고객이 보험료 등의 금액을 납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 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예시]

7월 2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18원,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이 1달러=1,130원이고, 7월 4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23원,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이 1달러=1,135원 일 때,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이에서 7월 2일 1달러=1,120원, 7월 4일 1달러=1,125원을 각 해당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결정한 경우

달력(일자)	7월 1일 (영업일)	7월 2일 (영업일)	7월 3일 (공휴일)	7월 4일 (영업일)	7월 5일 (영업일)
납입기준환율(1달러)	1,130원	1,120원	-	1,125원	1,115원

- 주계약을 7월 4일에 가입(계약),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제1회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계약일 - 제1영업일'이므로 7월 2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달러 × 1,120원 = 112,000원을 제1회 보험료로 납입
- 7월 5일에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자동이체),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이므로 7월 2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달러 × 1,120원 = 112,000원을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
- 7월 5일에 제2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자동이체 이외),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납입하는 제2회 이후의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 환산기준일은 '납입일 - 제1영업일'이므로 7월 4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달러 × 1,125원 = 112,500원을 납입

* 단, 납입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이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무효, 청약의 철회, 계약의 취소 등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을 돌려드리는 경우 또는 회사가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납입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단, 미화로 납입한 보험료는 동일한 금액을 미화로 돌려 드립니다.

㉠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II(부가가능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그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지급금의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형태	환산기준일	
사망보험금액	청구일 - 제1영업일	
만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 제1영업일	
연금액	지급사유 발생일 - 제1영업일	
해지환급금	임의해지	해지신청일 + 제1영업일
	임의해지 이외	해지일 - 제1영업일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지급금 지급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지급금을 환산기준일의 지급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지급기준환율: 회사가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 단, 지급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의 사이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시]

7월 4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07원,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율)이 1달러=1,100원 일 때,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율)사이의 1달러=1,105원을 지급기준환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결정한 경우

달력(일자)	7월 1일 (영업일)	7월 2일 (영업일)	7월 3일 (공휴일)	7월 4일 (영업일)	7월 5일 (영업일)
지급기준환율(1달러)	1,110원	1,100원	-	1,105원	1,095원

7월 2일에 임의해지를 신청하고, 해지환급금이 2,000달러인 경우

⇒ 해지환급금의 환산기준일은 '해지신청일+제1영업일'이므로 7월 4일 지급기준환율에 따라 2,000달러x1,105원 =2,210,000원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

알아두실 사항

1.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3. 기존계약 해지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6. 청약철회 청구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구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보험료 자동납부제도 안내

- 보험료 자동납부란 별도의 고지서 발행 없이 보험료 납부자의 예금 계좌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인출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려면 당사 또는 거래은행의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9.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02-2262-6565)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주거래은행

- 현재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주거래은행은 “하나은행”이며, 향후 주거래은행이 변경될 경우 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 보험계약은 달러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달러연금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udential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Tel. 02-2144-2000 Fax. 02-2144-2100 CS Center. 1588-3374
수신자부담전화. 080-928-3838 준법감시인확인필-SM-2103009-3
인쇄일자. 2021. 04. 01